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최근 인감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민원사고로 이어져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어, 이들 인감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각종 인감사고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ㅇ 대상 공무원 : 인감의 신고(변경업무포함)업무, 인감증명 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
- ㅇ 가입방법 : 재정보증보험
- ㅇ 배상 한도액 : 1인당 최저 5천만원 이상
- ㅇ 채결방법 : 직위포괄식
- ㅇ 보험기간 : 1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자료

-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
- 인감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 가입조례표준(안)송부 (도 총무 12130-10230(2003.1.29)호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감담당공무원) 이 조례에서 인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포함)업무, 인감증명발급업무,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제3조(보험의 가입) ①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성주군인감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(안)의견

구 분	세부내용(안)	사 유	비고
○ 가입범위	- 인감의 신고(변경 신고포함)업무, 인감 증명발급업무담당자	○ 인감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인감사고 피해로부터 위험부담을 덜어 줌	
○ 가입방법	- 방법 : 재정보증보험 - 보험기간 : 1년 - 방식 : 직위포괄식	○ 인감업무 추진에 따른 배상책임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	
○ 보증한도액	- 1인당 최저 5천만원 이상	○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인감업무수행	
○ 보험료지급	- 직위 포괄계약시 보증보험증권발급과 동시에 지급	○ 인감사무 추진의 기피현상 방지 및 업무의 능률성 제고	